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』

# 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##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6. 8. 25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개정(제안)이유

-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·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관련법령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.

## 주요골자

### ○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관하여 규정(안제3조)

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,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,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으로 규정함.

### ○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(안제7조)

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중 선임하며 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30일전에 선임하도록 정함.

### ○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(안제9조)

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형태를 규정하며, 민간위탁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,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도록 함.

### ○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(안제14조)

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였으며,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,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.

○ **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(안제17조)**

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『비영리 민간단체지원 법』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 하였으며,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정함.

**관련법규**

- 『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』 : 2005. 8. 4 공포
- 『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』 : 2006. 2. 6 공포
-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표준안 시달  
『시민협력과-8002, 2006.5.10』

**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**

- 동작구

## 검토의견

- 2006.2.5 『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』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보면,
  
- **안제3조에는**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,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,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 등으로 확대한 내용이며,
  
- **안제6조 내지 제11조**에는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  -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되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30일전에 선임하고,
  -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 - 자원봉사센터에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예산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  
- **안제14조에는**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,

- **안제17조에는**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『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』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,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정하는 등 동 조례 대부분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참고로 현재 우리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수는 16,500명 입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6. 9. 8.

보고자 : 이 남 식